Q7-4	어린이안전교육은 어디에서 받는지?

• 어린이안전교육은 「어린이안전법 시행령」 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*에서 받아야 함

* 행정안전부 홈페이지(www.mois.go.kr) [뉴스·소식-새소식-알립니다]에 게시

- 다만, 관리주체가 소속 종사자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어린이안전법」과 하위법령·고시에서 정한 강사 요건, 시설·장비 기준과 안전교육 내용·방법 등을 준수하여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가능함

Q7-5	안전교육을 2시간씩 2개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도 되는지?

• 안전교육은 1개의 기관에서 4시간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임

-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안전교육 내용은 큰 틀에서 같으나, 기관마다 구성·순서에 차이가 있어 같은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함

※ 부득이하게 이론교육 후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없어진 경우 또는 국가 등에서 2시간의 이론(실습)교육만 받은 경우 다른기관에서 실습(이론)교육을 받는 것은 가능함

Q7-10	전년도 안전교육 이수일 이후 꼭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?

- 전년도 안전교육 이수 이후 꼭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
  - 다만,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안전교육 이후 가급적 1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적정함

> 예시) 2021년 4월 15일에 안전교육을 받고 1년 6개월 후 2020년 10월 15일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도 무방함

Q7-12	**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받으면 「어린이안전법」에 따른 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?**

- 「학교보건법」, 「응급의료법」 등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우 「어린이안전법」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
  - ① 응급처치실습 2시간을 포함한 4시간의 안전교육 시간 등 「어린이안전법」과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할 것
  - ②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교육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「어린이안전법」에 따른 교육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이수할 것
- 위 경우 외에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 중 다른 교육의 일부분으로 받은 경우는 「어린이안전법」에서 정한 안전교육으로 보기 어려움